

광명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0. 12. 15 훈령 제298호
일부개정 2015. 3. 6 훈령 제346호
일부개정 2015. 12. 11 훈령 제363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통장증
발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6. 9. 26 훈령 제373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운
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3. 6>

④ 인사위원회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시험에 의하여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다만,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뿐

인 경우에는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최초 회의 소집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선발시험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적격성 심사를 한다.

제8조(형식요건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한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등에 대한 해당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 면접시험은 능력요건 등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 등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시험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의무) ① 위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선발시험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비보상 및 시험수당) ① 위원의 회의 출석 및 출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② 선발시험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6 훈령 제34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훈령 제36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통장증 발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광명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훈령 제373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
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15. 12. 11>

서 약 서

본인은 이번에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임용시험 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8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의거 위반 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심사)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광명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